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공고 제2021-93호

2022년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구분	모집인원	직무내용
국립공원 지 킴 이 (녹색순찰대)	24명	○ 국립공원 청소(시설물, 탐방로 등)에 관한 업무 ○ 불법·무질서행위(취사, 흡연 등) 예방·단속에 관한 업무 ○ 시설물(주차장, 안내표지판, 난간 등)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탐방안내, 안전(위험지역 순찰, 통제 등)에 관한 업무 ○ 청사관리(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 기타 국립공원 보전·보호에 관한 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우대사항
녹 색 순찰대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 18세 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세부내용은 아래 **'8. 기타사항'의 '바~자'항 참고**	○ 국립공원 지역주민 ○ 관련 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10%)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취 업 취 약 계 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노숙자, ⑫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 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 가능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근무여건	○ 근무조건: 주5일 근무 - 휴일 및 공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 보수수준: 녹색순찰대[월급 2,044,440원(세전)] ○ 근무장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내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주시, 서울 도봉구) ※ 사무소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 가능
고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까지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고용기간 변동 가능 - 계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차기년도(2023년) 등 고용 미보장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2021. 11. 30.(화) ~ 2021. 12. 14.(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우편 접수**(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방문접수 미시행)

※ 우편접수 기준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는 12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

- (우)11645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51-97

라. 원서교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워크넷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2. 2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3배수 - 심사기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등
면접전형	2021. 12. 30.(목)	○ 세부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2. 31.(금)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서류(40%)·면접결과(60%) 합산, 고득점자 선정
근무 시작일	2022. 1. 1.(토)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및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접수자는 다시 접수할 필요 없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 드립니다.

※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 일정이 변동되거나 화상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 및 응시 방법은 별도로 통지 드립니다.

6. 제출서류

필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①)(첨부1 양식) - 온라인(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및 오프라인(첨부 양식) 다운로드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1부(②)
선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③) ○ 봉사활동 증명서(2018. 11. 30. ~ 2021. 11. 29.) 혹은 헌혈(1매에 한해 인정) 증명서(④)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 이탈주민 등) 확인 증명서

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주에 대한 정보동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날인 시 서류접수 불가

② 일모아시스템 조회 목적이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③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외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은 미인정**

- 지원서 내 기재된 내용이 경력증명서로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 혹은 '직무'가 채용분야 관련 직무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내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직무 확인 불가시 미인정)

- 담당직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근무지로부터 날인받은 경력확인서(첨부2 양식)를 제출 바랍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 및 오기재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의 근무 경력은 지원서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정보 조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서 내 기간 및 근무처·직무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 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공단 근무경력을 별도 우대하지 않으며, 타기관과 동일하게 평가)

④ 봉사활동 경력증명서: 3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국가기관·공공기관·1365포털·VMS 발급에 한해 인정
- 국립공원 자원봉사활동 실적(재직기간 내)은 인정되지 않으며, 헌혈은 기한 내 1회만 인정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제출서류를 전자파일(PDF, JPG 등) 형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모집 미시행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가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 정보는 사실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고, 편견정보 혹은 평가와 무관한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소득수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채용 공정성 강화

가. 공단은 공정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본 채용에 대해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QR코드 접속을 통해 익명으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채용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접수 방법은 인사팀장에게 문의바랍니다.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

국립공원 공익신고

8. 기타사항

※ 본 사업은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 감액 편성 시 모집 공고문상의 모집인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등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이 있을 경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안내문 게시, 응시자 개별 통보 등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 제출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사업 참여여부가 확정된 이후 모집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지원자가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타 제출한 증빙서류는 10년간 보관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바. **가구(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자),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 제한됩니다(신청자 가구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하나라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제한).**

※ 단, 토지·주택·건물·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3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3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사. **반복참여자는 참여를 제한합니다(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단, 만 6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아.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기간(1년) 이후 곧 바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자. 선발기준일 현재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참여가 배제**되며, 참여자가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하여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차.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동의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하단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미동의 또는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가 배제되거나 해당 항목은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카.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채용은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파. 본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친족관계 등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을 제척하며, 응시자가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평가 전까지 전형 운영진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031-828-8015, 녹색순찰대 담당 현석원 계장) 또는 행정과(☎031-828-8033, 인사담당 김길현 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30.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첨부 1〉

국립공원지킴이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 시 선택기입
이메일 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자 ☐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험자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실 업 기 간	20 . . .~20 . .	이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농어업, 주부, 무직, 기타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과거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 여 기 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봉사활동 실적	활동단체	시간	내용

구직등록 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1 본 신청서는 국립공원지킴이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국립공원지킴이사업 선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 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 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여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험자 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 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귀하

〈첨부 2〉

경력 확인서

<table>
<tr><td rowspan="3">인적사항</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경력사항</td><td colspan="2">근 무 기 간</td><td rowspan="2">직 급</td><td rowspan="2">직 위</td><td rowspan="2">근무부서</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r>
<tr><td>0000. 00. 00.</td><td>0000. 00. 00.</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근무년한</td><td colspan="2">00년 00월 00일</td><td>제출처 및 용도</td><td colspan="2">국립공원공단 입사 지원용</td></tr>
<tr><td rowspan="2">담당직무</td><td colspan="5">※ 지원분야 관련 직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직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발급정보</td><td colspan="2">담당부서 및 발급자 성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경력 증빙을 위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요청
○ 수집목적: 입사전형 평가항목 중 경력사항의 증빙 및 지원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자의 정보
○ 수집항목: 지원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기간: 채용절차 종료 후 180일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사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 서명: (지원자 성명)_____(인)</td></tr>
</table>

위와 같이 근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

대상별	10%가점	5%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의 유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애국지사의 가족 ○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지원대상자)본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중 1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마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 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보연계를 요청,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시켜야 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해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참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5,018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년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000	70,702	29,273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출처 : 보건복지부 **('21년 기준은 12월 중 별도 송부예정)**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나. **장애인**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공단은 해당사항 없음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 · 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는 아래 참조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확인방법은 아래표 별도 확인**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 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❶ **(무급휴직자 정의)**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❷ **(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아래 참조)'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❹ **(업무처리절차)**

A. 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 일모아 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며, 확인 방법은 1월 초에 별도 안내 예정

C-1.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참여 여부 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유선 신청)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